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2호로 2023년 3월 16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14. ~ 2023. 3. 20):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의 하천공간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하천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하천의 이용자인 구민의 책무 또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하천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하천보전활동 협력과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에게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 등의 하천 공간은 녹지지대로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구민들의 쉼터인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천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보전에 대한 구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변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미래세대 또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하천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하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